

세법연구 08-03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2008. 9

원종학 · 마정화 · 정경화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 | |
|---------------------------|----|
| I. 서론 | 7 |
| II. 자유무역지역 현황 | 9 |
| 1. 자유무역지역 개요 | 9 |
| 가. 자유무역지역 개념 및 유형 | 9 |
| 나. 자유무역지역 특징 | 11 |
|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 13 |
| 가. 개 관 | 13 |
| 나. 자유무역지역 특혜 | 21 |
| 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성과 | 23 |
| 라.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 절차 | 24 |
| III.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율 | 29 |
| 1. 관세 적용세율 구조 | 29 |
| 가. 개 관 | 29 |
| 나. 관세율 종류 | 29 |
| 다. 관세율 적용순위 | 32 |
| 2.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 | 33 |
| 가. 개 관 | 33 |
| 나. 원산지 요건 | 33 |
| 다. 직접운송원칙 | 34 |
| 3.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율 결정 | 35 |
| 가. 개 관 | 35 |
| 나.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 36 |

| | |
|------------------|----|
| 다. 문제점 | 39 |
| IV. 해외사례 | 41 |
| 1. 미 국 | 41 |
|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 41 |
|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 43 |
| 다. NAFTA 관련 사례 | 49 |
| 2. 대 만 | 51 |
|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현황 | 51 |
|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 55 |
| 3. 싱가포르 | 56 |
|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 56 |
|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 61 |
| 4. 국제 비교 | 62 |
| V. 요약 및 결론 | 65 |
| 참고문헌 | 67 |
| <부 록> | 68 |

표목차

| | | |
|-----------|------------------------------|----|
| 〈표 II-1〉 | 외국의 자유무역지역 현황 | 11 |
| 〈표 II-2〉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비교 | 14 |
| 〈표 II-3〉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06.12.31 현재) | 17 |
| 〈표 II-4〉 | 자유무역지역 특징 | 17 |
| 〈표 II-5〉 | 항만 ·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 18 |
| 〈표 II-6〉 | 자유무역지역 구분별 현황 | 19 |
| 〈표 II-7〉 |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임대료 | 21 |
| 〈표 II-8〉 | 군산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공장 임대료 | 22 |
| 〈표 II-9〉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및 외화가득액 | 23 |
| 〈표 II-10〉 | 마산자유무역지역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 24 |
| 〈표 III-1〉 | 탄력관세제도의 발동요건 비교 | 31 |
| 〈표 III-2〉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32 |
| 〈표 III-3〉 | 우리나라 FTA상의 직접운송원칙 | 35 |
| 〈표 III-4〉 | 협정세율 비적용의 근거조항 | 38 |
| 〈표 IV-1〉 | 대만 수출가공구와 자유무역항의 혜택 비교 | 55 |
| 〈표 IV-2〉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규모 | 58 |
| 〈표 IV-3〉 | TV에 대한 관세부담 비교 | 63 |

그림목차

| | |
|--------------------------------------|----|
| [그림 II-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20 |
| [그림 II-2]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련 신고도..... | 26 |
| [그림 II-3] 국내 관세영역으로의 통관절차..... | 27 |
| [그림 III-1] 관세율의 종류..... | 30 |
| [그림 III-2] FTA 협정세율 비적용시 문제점 | 40 |
| [그림 IV-1] 미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 47 |
| [그림 IV-2] 협정세율 비적용 사례..... | 50 |
| [그림 IV-3] 대만 수출가공구 현황..... | 52 |
| [그림 IV-4] 대만 수출가공구의 산업 변화..... | 52 |
| [그림 IV-4]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위치..... | 58 |

I. 서론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을 말함.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등의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무역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함.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진흥, 고용 증대, 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마산산업단지에 설치된 것이 최초임.
 - 2004년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통합하여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부산항(용당·감천·부산-진해),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울춘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은 「관세법」상 적용순위(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결정됨.
 - 관세법상 적용순위에 따르면 FTA 등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이 먼저 적용됨.
 - 그러나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고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정

세율을 적용하게 됨.

- 현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FTA 관련법령의 해석상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 이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협정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FTA 체결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의 기업 활동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되어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세율을 결정하는 근거를 검토함.
 - 둘째,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반입제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

II. 자유무역지역 현황

1. 자유무역지역 개요

가. 자유무역지역 개념 및 유형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세, 수량 제한, 각종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을 말함.
 - 자유무역지역의 규모는 개별 공장이나 면세점 같은 소규모에서 산업단지, 항만 또는 공항 및 그 배후지,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개방화 및 전체적인 규제 완화 없이 국제분업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정책방안임.
 -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국제무역 촉진, 고용 창출, 국제물류 유치·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면적인 개방화와 규제 완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정책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국제 교역활동상의 규제 완화를 통해 무역과 물류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주로 항만이나 공항과 그 배후지역에 설치되며 자유항, 통과지대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둘째,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기술이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주로 임해지역의 산업단지에 설치되며 수출가공구가 대표적 사례임.
 - 셋째, 위 두 유형의 복합형태인 생산·물류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생산과 물류를 결합한 복합형으로의 발전을 추구함.
-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는 자유지역(Free Zone; FZ),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또는 Free Trade Zone; FTZ),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 FEZ)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자유무역지역의 시초는 중세시대의 자유항(Free Port)에서 찾을 수 있음.
 -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지역은 1934년 미국이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 Act)’을 제정하고, 1936년 뉴욕을 시발로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함.
 - 이 때까지의 자유무역지역은 선적, 저장, 포장, 재수출 등 중계무역이나 상업적 교역활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함.
 - 1960~70년대에 제조업 생산활동에 중심을 둔 수출가공구(EPZ) 형태의 자유무역지역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 한국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대만의 까오슝 수출가공구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Free Trade Zone’이란 명칭을 사용해도 비관세지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예: 일본)도 있음.
- 비관세지역으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현황은 다음 <표 II-1>과 같음.
 - 2008년 현재 미국 266개, 인도 138개, 중국 15개, 한국 12개, 영국 5개, 대만 5개, 싱가포르 5개 지역에 비관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표 II-1〉 외국의 자유무역지역 현황

| 국가 | 자유무역지역 수 | 유형 |
|------|----------|----------|
| 미국 | 266 | FTZ |
| 인도 | 138 | SEZ |
| 중국 | 15 | FTZ |
| 한국 | 12 | FTZ |
| 영국 | 5 | FZ |
| 대만 | 5 | FTZ, EPZ |
| 싱가포르 | 5 | FTZ |

자료: 각국의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Notices 334 Free Zone, 2004. 4

나. 자유무역지역 특징

-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타 지역과 분리하여 운영함.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기업활동은 관세, 규제, 세금 등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과 분리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수출입이 주된 경제활동이 아닌 기업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하는 것이 기업활동(역내 인력 및 화물 출입)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역에 대한 관세, 수량 제한, 행정적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설치국가(host country)의 보호장벽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첫째,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가 면제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이 때 쿼터제한이나 보세규제(bonding regulation)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쿼터 이상을 저장시켜 놓았다가 쿼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다 곧바로 반출 가능함.

- 둘째,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기업은 물품이 지역 내에 머물러 있거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부터는 관세법이 적용되므로, 관세자유지역을 거쳐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됨.
- 셋째, 지역 내 반입물품은 세관당국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반입한 기업이 자기 물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짐.
 - 즉, 보세창고 보관증을 담보로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도 가능함.
- 넷째, 자유무역지역 내의 일정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은 특히 진출국 내에 독자적인 판매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기업들에 매우 유용함.
- 다섯째, 도입한 상품을 실제 판매할 때까지는 송장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늦출 수 있음.
 - 이는 소득신고를 보다 유리한 납세연도까지 늦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음.
- 여섯째,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구조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부분품을 관세유예 상태로 수입하여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을 국내시장에 반출할 수 있음.
 - 미국이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임.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가. 개 관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 도입 배경
 -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특별법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마산에 산업단지를 설치함.
 - 이후 1973년에 익산에도 설치·운영됨.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수출 증진,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함.
 - 이를 위해 관세법, 무역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

-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같은 해 6월 23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함.
 -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법 목적 관련)

- '70. 1. 01 : 수출자유지역설치법(특정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 '00. 1. 12 :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
- '04. 3. 22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 국제물류의 원활화 추가

□ 자유무역지역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지칭함.

○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일원 3개 지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5개 지구)
- 광양만(여수·순천·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5개 지구)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중 지정되어 있음.

〈표 II-2〉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비교

| 구분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
|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지정목적 |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 |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 외자유치 |
| 지정위치 | 항만, 공항 주변지역, 산업단지 |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형은 단지 내에 165천~1,653천㎡ 내외 • 개별형은 지정위치 제한 없지만 17천~331천㎡ 등 |
| 지역특성 | 비관세지역 | 특별행정구역수준(자치단체조합) | 단지형은 임대단지운영 원칙이며 개별형은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
| 지정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정요청이 가능 | 지식경제부장관 - 시도지사 지정요청이 가능 |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 지정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울춘 • 부산, 광양, 인천, 인천공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2003년) • 황해(평택, 당진), 대구경북(대구, 경산, 영천, 구미), 새만금·군산(200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오창, 전주, 구미, 평동, 대불, 진사, 금의, 당동, 지사 |

〈표 II-2〉의 계속

| 구분 | 자유무역지역 |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
|------------|--|---------------------------|---|---|---|
| 입주자격 | 제조업 | 외투기업 내국기업(50% 이상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등 (외투지분 30% 이상, 단, 대불·평동은 1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제조업: 3천만\$ 이상 관광업: 2천만\$ 이상 물류업: 1천만\$ 이상 연구개발: 5백만\$ 이상 |
| | 도매업 물류업 | 도매업: 총거래물량 중 50% 이상 수출 | | | |
| | 지원업 | 금융업, 보험업 등 | | | |
| 조세감면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 익산: 외투기업 기타지역(군산, 대불, 동해, 울진 등): 제조업 1천만\$ 이상 외투기업, 물류업 5백만\$ 이상 외투기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 이상 관광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 |
| 조세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익산: 5년간 100%, 2년간 50% - 기타지역: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15년(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 50% 지방세: 8~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 50% 지방세: 8~15년 | |
| 관세부과 | 외국물품과 지역 안에서 사용, 소비되는 일부 내국물품은 면제, 환급 | | 자본재 3년간 면제 | 자본재 3년간 면제 | |
|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 수준 (협의 후 결정) | | 부지가액 10/1,000 수준 | 부지가액 10/1,000 수준(협의 후 결정) | |
| 임대료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100% 감면: 고도기술(1백만\$ 이상) 일반제조(5백만\$ 이상): 75% | | 감면율 미결정(관리청이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기술 100% 일반제조 75% | |
| 자금지원 | '05년까지 국비 100%' 06년 이후 75% | | 분담률 미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국비 40% 비수도권: 국비 75%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일원화('04. 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기업전용단지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04. 1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자료: 관련 법률 정리

□ 자유무역지역 도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적용 범위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반입신고 시점부터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즉,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전 시점과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시점부터는 관세법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 간에 공급·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
 - 물류 및 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함.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산업단지, 공항, 항만으로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함.

〈표 II-3〉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06.12.31 현재)

(단위: 천㎡)

| 명칭 | 용당 | 감천 | 부산·진해 | 광양 | 인천 | 인천공항 |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 울촌 | 동해 |
|-----|---------|--------|----------|--------|--------|--------|--------|---------|---------|----------|----------|----------|
| 지정 | 1,097 | 278 | 4,077 | 6,754 | 2,306 | 2,093 | 954 | 309 | 1,254 | 1,158 | 344 | 248 |
| 예정지 | 98 | 770 | - | - | - | - | - | - | 1,019 | - | - | - |
| 지정일 | 02.11.1 | 02.1.1 | 04.12.31 | 02.1.1 | 03.1.1 | 05.4.6 | 70.1.1 | 73.10.8 | 00.10.6 | 02.11.21 | 05.12.12 | 05.12.12 |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2006.

〈표 II-4〉 자유무역지역 특징

| 구분 |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 동해 | 울촌 |
|--------------|------------|-------------|-------------|--------------|--------------|--------------|
| ○ 소재지 | 경남마산시 | 전북익산시 | 전북군산시 | 전남영암군 | 강원동해시 | 전남순천시 |
| ○ 지정일 | 1970. 1. 1 | 1973. 10. 8 | 2000. 10. 6 | 2002. 11. 21 | 2005. 12. 12 | 2005. 12. 12 |
| ○ 총면적(천㎡) | 954 | 309 | 1,254 | 1,155 | 248 | 344 |
| - 공장용지 | 703 | 276 | 1,008 | 911 | 163 | 263 |
| - 표준공장(동수) | 75(7개동) | 22(2개동) | 113(8개동) | 83(7개동) | 18(2개동) | - |
| (표준공장연면적) | (88) | (20) | (74) | (50) | (11) | |
| - 기타(도로, 시설) | 250 | 11 | 135 | 164 | 67 | 80 |
| ○ 입주업체 수 | | | | | | |
| (가동업체, 외투업체) | 89 | 31 | 27 | 29 | | 1 |
| - 표준공장 수 | (82, 52) | (30, 6) | (4, 3) | (15, 21) | - | (-, 1) |
| (가동업체) | 13(13) | 11(11) | 10(7) | - | | - |
| - 자가공장 수 | 76(69) | 20(19) | 17(1) | 29(15) | | 1(-) |
| (가동업체) | | | | | | |
| ○ 입주율(%) | 99 | 100 | 28.2* | 98* | | |
| - 자가공장(천㎡) | 697 | 276 | 241 | 898.4 | - | - |
| - 표준공장(천㎡) | 83 | 22 | 64 | - | | |

〈표 II-4〉의 계속

| 구 분 |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 동해 | 울촌 |
|-------------------|--|---|---|---|----------|------------|
| ○ 수출('07. 12) | 3,256,000천\$ | 150,387천\$ | 13,916천\$ | 291,951천\$ | - | - |
| 수입('07. 12) | 1,921,162천\$ | 82,651천\$ | 514천\$ | 13,000천\$ | - | - |
| ○ 투자유치 (외국인투자) | 216,973천\$ (128,388천\$) | 43,968천\$ (5,313천\$) | 158,417천\$ (5,815천\$) | 248,079천\$ (35,330천\$) | | 50 (50) |
| ○ 고용('07. 12) | 7,046명 | 1,294명 | 1,901명 | 2,046명 | - | 20명 |
| 주요 입주업종 |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 임대료(건물1층) 토지 | 965원/㎡/월 130원/㎡/월 (연 1,560원/㎡) 외투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10년 무상 | 631원/㎡/월 94원/㎡/월 (연 1,128원/㎡) 외투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10년 무상 | 652원/㎡/월 80원/㎡/월 (연 960원/㎡) 외투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10년 무상 | 64원/㎡/월 (연 768원/㎡) 외투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10년 무상 | - | - |
| ○ 총사업비(억원) | 816 | - | 1,884 | 1,513 | 407 | 495 |
| - 조성단가/㎡ | 51만원 | | 15만원 | 13만원 | 18만원 | 14만원 |
| - '06년까지투자액 | '06. 12. 15 준공 | - | 1,869 | 778 | 9 | 6 |
| - '07년사업비 | - | - | 5 | 209 | 45 | 55 |
| 비 고 | 160천㎡ 확장 준공 ('06.12.15) |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 산업 단지 전환) | '05. 10. 24 개원 | '03~'08년 | '06~'09년 | '06~'09년 |

〈표 II-5〉 항만·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 구 분 | 부산항 | 광양항 | 인천항 | 인천국제공항 |
|---------------------|---------------------------|----------------------------|----------------------|-----------------------|
| ○ 지정일 | '02. 1. 1 | '02. 1. 1 | '03. 1. 1 | '05. 4. 6/'07. 12. 31 |
| ○ 면적(천㎡) | 5,451 | 6,755 | 2,294 | 3,015 |
| ○ 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 25(22) | 26(25) | 15(0) * 기존 10업체입주 | 550 (12) |
| ○ 화물유치량 | 1,997만톤 | 982만톤 | 하역업체 | - |
| ○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 455,900천\$ (80,794천\$) | 343,900천\$ (108,155천\$) | 기존 국내업체 입주 | 108,900천\$ |
| 비고(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자료: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2007

□ 자유무역지역 지정면적

- '07년말 기준 자유무역지역 지정면적은 21,779천㎡로 '05년도 이후 20,858천㎡에서 921천㎡로 증가함.
- '07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확대 지정에 따른 증가임.
 - 지정면적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정 공고한 면적을 의미함.

〈표 II-6〉 자유무역지역 구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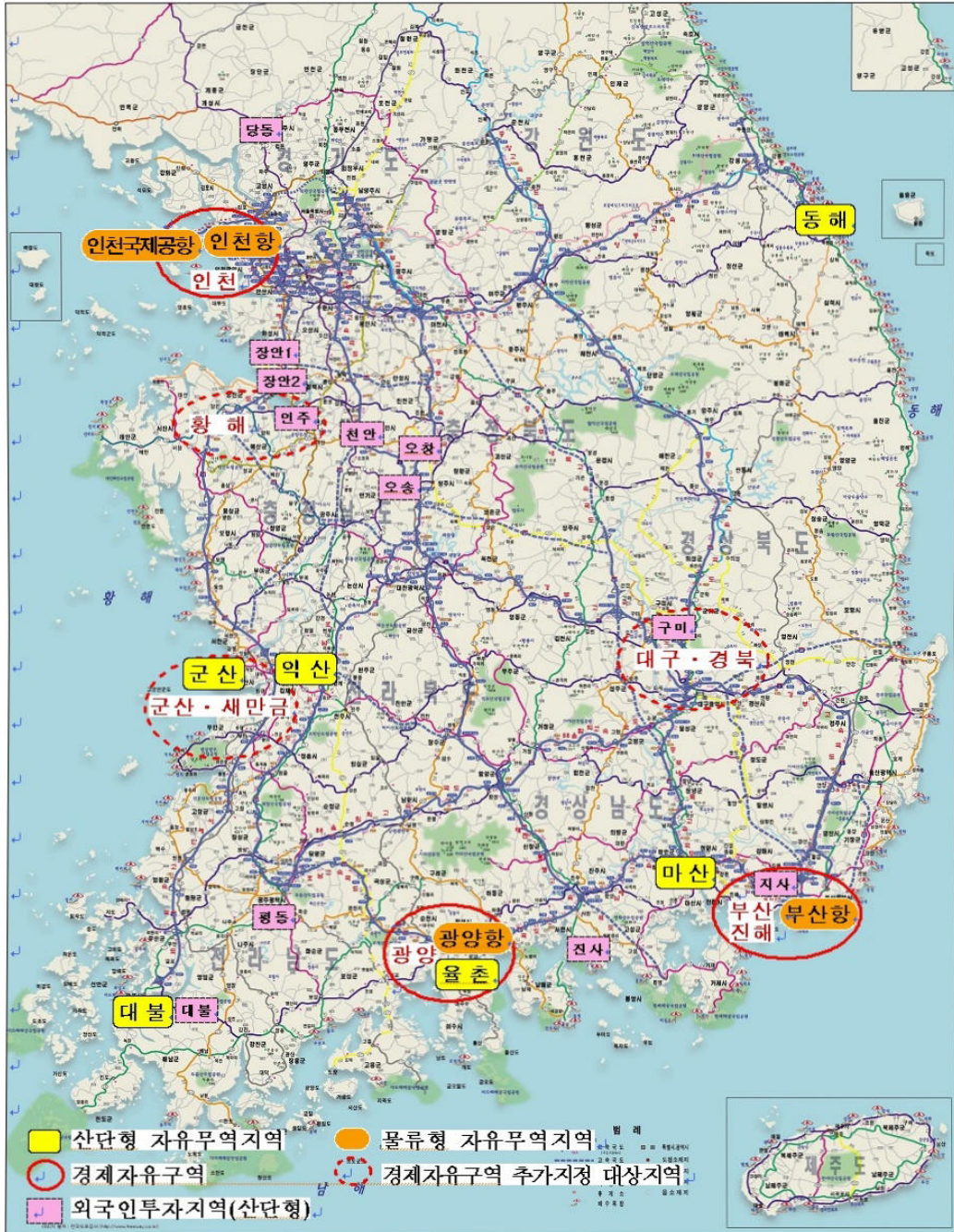
(단위: 천㎡)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산업단지 | 3,677 | 3,677 | 3,677 | 4,268 | 4,268 | 4,268 |
| 항만·공항 | 12,206 | 14,500 | 14,500 | 16,590 | 16,590 | 17,511 |
| 계 | 15,883 | 18,177 | 18,177 | 20,858 | 20,858 | 21,779 |

자료: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2007

- 산업단지형은 마산('70, 953천㎡) 및 익산('73, 309천㎡)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00년에 군산(1,256천㎡)을 '02년에는 대불(1,158천㎡)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해(248천㎡), 울촌(343천㎡)자유무역지역을 '05년 12월에 신규 지정함.
- 공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면적 증가는 구관세자유지역이 '04년 6월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고, 이후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II-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나. 자유무역지역 특혜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무역 진흥, 물류 촉진, 지역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
- 관세특례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함.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함.
- 저렴한 임대료 및 감면
 - 마산자유무역지역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미화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100% 감면
 - 자가공장 용지 임대료(월): 130원/m²

〈표 II-7〉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임대료

(m²당 임대료 : 층별요금/당월 US\$ 기준환율)

| | 1층 | 2층 | 3층 | 4층 |
|-----|-------------------|-------------------|--------------------|--------------------|
| 원/월 | 965m ² | 857m ² | 827/m ² | 415/m ² |

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첨단, 고도기술 및 일정규모 이상 신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 토지 임대료(월) : 40~80원/m²
 - 표준형 공장 임대료(월) : 543~696원/m²

〈표 II-8〉 군산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공장 임대료

| 업종 | 임대료 | 임대기간 | 비고 |
|--|------------------------------|------|--------|
| 외국인 투자기업 -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으로서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10년간 무상 (이후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함) | 50년 | 재연장 가능 |
|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 | |
|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 80원/㎡/월 | 50년 | 재연장 가능 |
| 단,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 | | 재연장 가능 |

자료: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세제 감면

- 마산과 익산의 외국인 투자기업(기존 수출자유지역)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 최장 15년간 50~100% 감면
- 다른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이거나 500만달러 이상의 물류기업에 대해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 최장 15년간 50~100% 감면
-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 수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
 -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 적용함.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신고 등에 대해 관리기관이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성과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은 '07년 수출 32.5억달러, 외화가득액은 13.6달러로 외화가득률은 42%임.

- 외화가득액(국산원부자재, 임금, 임대료, 공공요금 기타 등)을 총수출금액으로 나눈 외화가득률은 2000년 29.3%에서 2007년 42%로 상승하였음.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 유치 노력 및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표 II-9〉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및 외화가득액

(단위: 천\$)

| 연도 | 수출실적 | | | 외화 가득액 (B) | 외화가득내역 | | | | 외화 가득률 (B/A) |
|--------|-----------|---------|-----------|------------------|------------|---------|-------|------------|--------------------|
| | 직수출 | 내국수출 | 계(A) | | 국산원부 자재 | 임금 | 임대료 | 공공요금 기타 | |
| 2000 | 4,330,111 | 112,030 | 4,442,141 | 1,302,551 | 558,970 | 214,676 | 2,062 | 526,843 | 29.3 |
| 2001 | 4,447,309 | 56,136 | 4,503,445 | 1,183,434 | 582,162 | 208,069 | 1,812 | 391,391 | 26.3 |
| 2002 | 4,029,573 | 72,318 | 4,101,891 | 1,282,393 | 488,876 | 228,344 | 1,901 | 563,272 | 31.3 |
| 2003 | 4,313,245 | 146,636 | 4,459,881 | 1,415,139 | 500,853 | 228,251 | 1,676 | 684,359 | 31.7 |
| 2004 | 4,403,201 | 214,576 | 4,617,777 | 1,342,512 | 537,464 | 225,272 | 1,974 | 577,802 | 29.1 |
| 2005 | 3,929,123 | 311,895 | 4,241,018 | 1,917,208 | 904,493 | 220,840 | 2,215 | 789,660 | 45.2 |
| 2006 | 3,479,989 | 434,177 | 3,914,166 | 1,678,500 | 976,716 | 222,052 | 2,233 | 477,499 | 42.9 |
| 2007 | 2,947,041 | 308,959 | 3,256,000 | 1,368,766 | 652,134 | 205,251 | 2,309 | 509,072 | 42.0 |
| 2008.2 | 284,716 | 22,771 | 308,487 | | | | | | |

자료: 마산자유무역관리원

〈표 II-10〉 마산자유무역지역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 연도 | 투자액(천\$) | | | 고용인원(명) | 업체 수(개사) |
|------|----------|---------|---------|---------|----------|
| | 내자 | 외자 | 합계 | | |
| 2000 | 57,683 | 193,676 | 251,359 | 14,415 | 78 |
| 2001 | 55,255 | 202,390 | 257,645 | 11,995 | 77 |
| 2002 | 59,125 | 211,398 | 270,523 | 12,011 | 79 |
| 2003 | 60,320 | 199,253 | 259,573 | 11,306 | 78 |
| 2004 | 58,892 | 205,027 | 263,919 | 9,021 | 76 |
| 2005 | 76,531 | 201,800 | 278,331 | 8,665 | 74 |
| 2006 | 74,286 | 169,939 | 244,225 | 7,298 | 79 |
| 2007 | 88,585 | 125,471 | 214,056 | 7,046 | 88 |

자료: 마산자유무역관리원

- 2007년 고용인원은 7,046명으로 마산지역 제조업 전체 고용인원의 40%에 해당하며, 수출액은 경남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음¹⁾.
 - 지역 거주 근로자의 주요 고용 창출 역할 및 외화가득액으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내국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나 기술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확산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효과가 있음.

라.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 절차²⁾

1) 외국물품

-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함(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0호, 관세법 제2조 제3호).

1) 마산시 의회

2) <http://www.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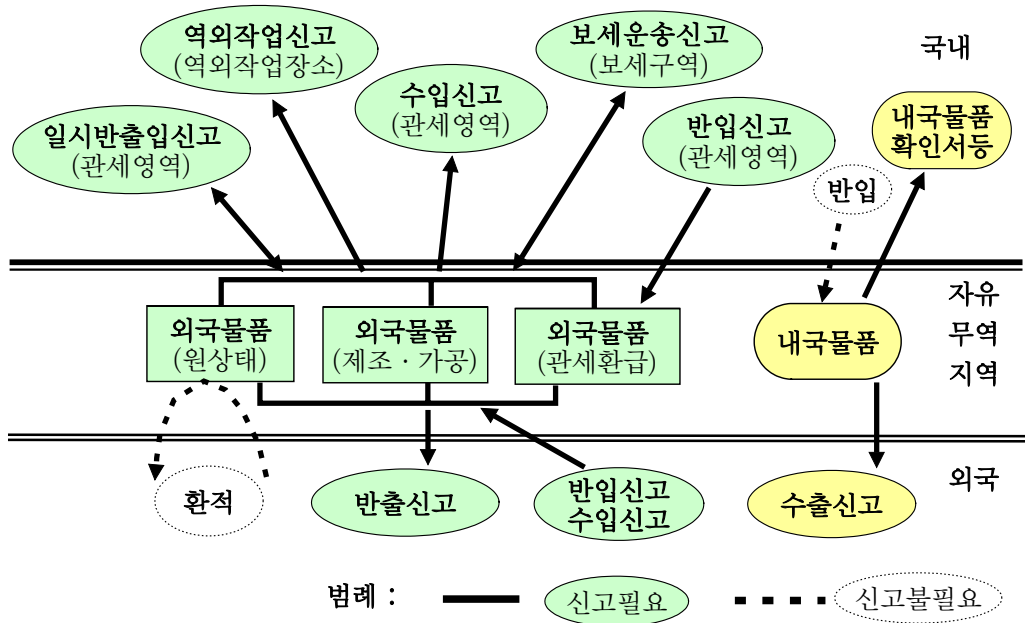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외국물품을 반출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일시반출입신고,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신고 및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
 - 보세운송
 - 일시반출입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을 물품의 수리,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임.
 - 역외작업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생산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의 생산 공정 가운데 일부 공정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2) 내국물품

-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의미함(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1호, 관세법 제2조 제4호).
- 내국물품은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지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동등한 효과를 가짐.
 -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과 같음.
-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그림 11-2]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련 신고도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3) 관세 특례

□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함.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이때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국내 관세영역으로의 통관절차 처리는 아래 그림과 같음³⁾.
 - 과세통관 예정 물품을 확정 후 과세 반출대장에 통관내역을 간략히 기재하고 수입신고시 필요한 장치장 일련번호를 수작업으로 생성함.
 - 수작업으로 생성한 장치장일련번호를 통관의뢰시 관세사에게 통보함.
 - 관세사로부터 수입신고필증 확인 후 당해 제품을 출고함.

과세반출대장 사용 양식

| 일자 | 장치번호 | 수입자 | 품명 | 수량(중량) | 금액 | 반출일자 | 신고번호 |
|----|------|-----|----|--------|----|------|------|
| | 1 | | | | | | |
| | 2 | | | | | | |
| | : | | | | | | |

[그림 II-3] 국내 관세영역으로의 통관절차



- 입주업체가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보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함.
 - ‘관세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함.

3) 마산세관 내부자료, 2008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입주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함.
- 시설재의 범위는 건물 또는 공장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에 한정됨.

Ⅲ.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율

1. 관세 적용세율 구조

가. 개 관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세율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세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결정됨.

○ 국제조약에는 FTA가 포함되는데,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FTA에 일반적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FTA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이행에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하게 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은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며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관세법」을 적용함.

○ 동법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세율은 「관세법」 규정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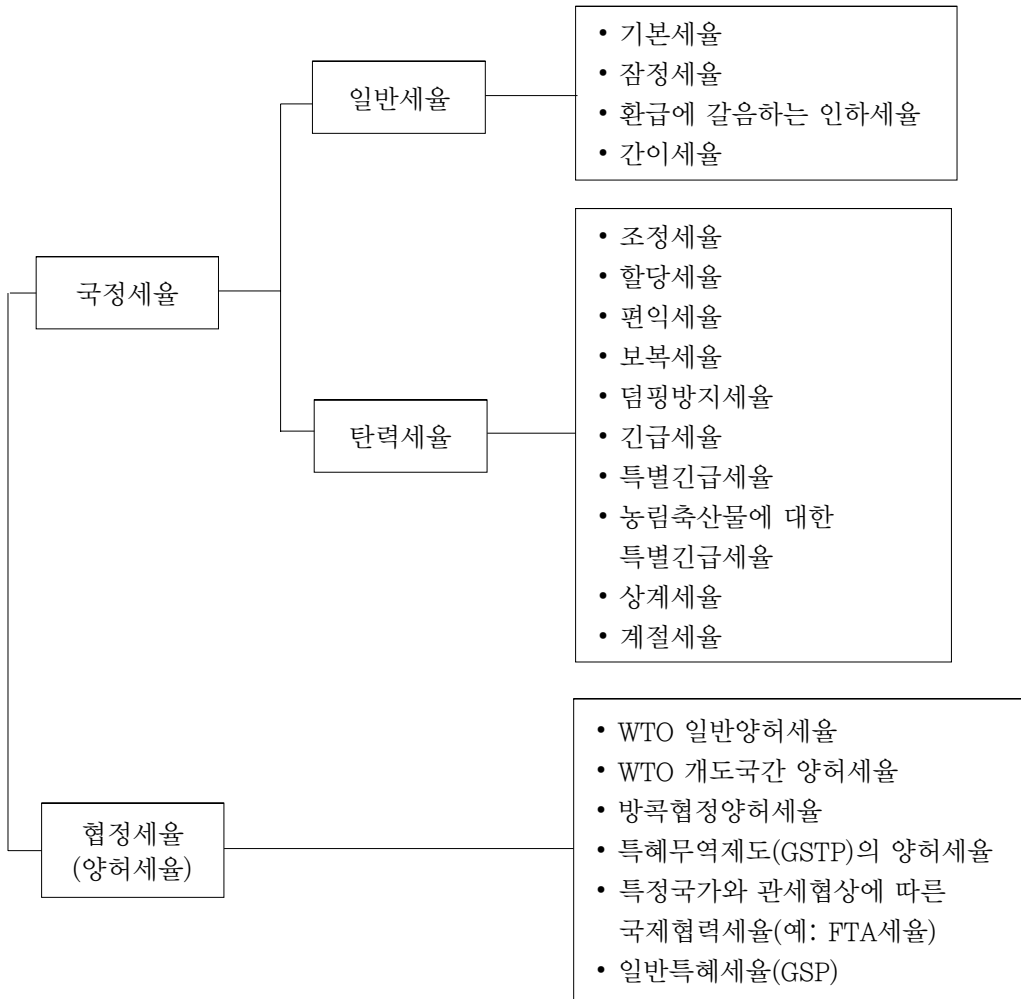
나. 관세율 종류⁴⁾

□ 관세법상 관세율은 [그림 Ⅲ-1]과 같이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됨.

4)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55~57

□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등으로 양허관세율을 정할 수 있음.

[그림 Ⅲ-1] 관세율의 종류



□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참작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이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임.
-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방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함.
- 관세법상 탄력세율의 종류는 모두 10가지인데, 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발동요건은 <표 Ⅲ-1>과 같음.

<표 Ⅲ-1> 탄력관세제도의 발동요건 비교

| 구분 | 발동요건 | |
|------------------|--|---------------------------------------|
| 덤핑방지관세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 보복관세 | 교역상대국이 한국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한국의 권익을 부정하거나 부당·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 |
|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
| 특별긴급관세 |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시 또는 제3국의 조치로 인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증가시 | |
| 조정관세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국제협력관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 |
| 상계관세 |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 |
| 편익관세 |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 |
| 계절관세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유사·대체물품이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할당관세 | 인하 | 물자수급의 원활 등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 인상 |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료: 성윤갑, 전계서, p.61

다. 관세율 적용순위

□ 관세율의 적용순위는 <표 Ⅲ-2>와 같이 탄력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으로 양허세율을 적용하며, 탄력세율과 양허세율에 정한 바가 없으면 기본세율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다만 국제협력세율, 편익세율, 할당세율은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됨.

<표 Ⅲ-2>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순위 | 종 류 | 비 고 | |
|----|---|------------------------------------|--|
| 1 | 덤핑방지세율(제51조) 상계세율(제57조) 보복세율(제63조) 긴급세율(제65조) 특별긴급세율(제67조의 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세율(제68조) |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 |
| 2 | 국제협력세율(제73조) 편익세율(제74조) | (종류) WTO 양허세율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 -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
| | 농림축산물양허세율(제50조 제3항 단서) | | -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6 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 |
| 3 | 조정세율(제69조) 할당세율(제71조) 계절세율(제72조) | | - 할당규정에 의한 세율은 일반 특혜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하여 적용 |
| 4 | 일반특혜세율(제76조 제3항) | | |
| 5 | 잠정세율(제50조) | | |
| 6 | 기본세율(제50조) | | |

- 주: 1.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2.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덤핑, 양허관세처럼 해당 세율 적용국가를 정한 경우 제외
 3. 같은 순위에서 경합시 낮은 세율 우선 적용

2.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

가. 개 관

-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적용 신청 전에 거래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운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⁵⁾.
 - ‘거래요건’은 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것임.
 - ‘품목요건’은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임.
 - ‘원산지요건’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임.
 - ‘운송요건’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직접운송원칙)되어야 한다는 것임.

- 품목요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품목분류표⁶⁾에 따라 판단함.
 - 2007년 단위별 품목은 4단위 1,221개, 6단위 5,052개, 10단위 11,703개로 구성되어 있음.
 - HS 품목번호는 6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나머지 4자리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협상에는 6단위까지 사용함.

나. 원산지 요건

- 원산지 판정은 협정세율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중심으로 역내산인지 여부를 결정함.

- ‘완전생산기준’은 동식물, 광물과 같이 한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한 나라에서 생산한 원재료로 최종 완제품까지 완성한 경우에 적용됨.

5) 성윤갑, 전계서, p.210

6) 국제 통일상품 분류위원회(HS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제 통일상품 분류제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이 1983년에 채택되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현재 HS협약체제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제조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됨.
- ‘세번변경기준’은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임.
예) 세번변경기준이 HS 6단위 변경인 경우,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6단위 변경이 발생하여 원산지는 중국임.
 -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데, 이 기준은 실질적 변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번 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조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함.
 - ‘제조가공공정기준’은 제조공정 중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예)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임.

다. 직접운송원칙

- 직접운송원칙이란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임⁷⁾.
- 특혜관세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함.
 - ‘직접 운송’ 요건은 특혜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 운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제3국에서 선적 또는 추가 가공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원산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서 수입될 경우에도 단지 지리적인 이유 또

7) 성윤갑, 전계서, p. 420

는 운송요건상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나 제3국의 세관 통제하에서 재포장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

- 다음 <표 Ⅲ-3>과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FTA 협정문은 모두 직접운송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표 Ⅲ-3> 우리나라 FTA상의 직접운송원칙

| FTA 종류 | 조항 | 내 용 | |
|--------|---------|-----|----------------------------------|
| 한·칠레 | 환적 | 원칙 | 단순경유 포함 |
| | | 예외 |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운송·보존 작업시 인정 |
| 한·싱가포르 | 직접운송 | 원칙 | 단순경유 포함 |
| | | 예외 |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운송·보존 작업시 인정 |
| 한·EFTA | 직접운송 | 원칙 | 단순경유 포함 |
| | | 예외 |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운송·보존 작업시 인정 |
| 한·아세안 | 직접운송 | 원칙 | 단순경유 포함 |
| | | 예외 | 지리적 이유, 보존 작업시 인정 제3국 발행송장 인정 |
| 한·미 | 통과 및 환적 | 원칙 | 단순경유 포함 |
| | | 예외 |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운송·보존 작업시 인정 |

자료: FTA 협정문 참조

3.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율 결정

가. 개 관

- 외국에서 원재료 등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시점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관세법」과 국제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 관세율은 관세법상 적용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결국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 즉 해당 협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요건(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하는지를 개별 사건별로 해석해야 함.

나.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997년 7월에서 2006년 9월까지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인 절연도료피복전선에 대해 기본세율(8%)이 아닌 방콕협정세율(6.2%)을 적용해 옴.
 - 이 시기는 방콕협정세율의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지침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는 데, ‘WTO양허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실상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왔던 것임.
 - WTO양허세율의 근거법규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등에 관한 양허관세 규정」은 WTO일반양허관세뿐만 아니라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방콕협정 양허관세, 유엔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WTO양허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방콕협정세율의 적용에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었음.
 -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세공장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관협 47040-167(1997.7.22)호⁸⁾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8)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WTO 양허세율과 기본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 참가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 참가국인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허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할 경우 상기의 양허세율을 적용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냐는 질의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53조 4 [원산지 증명] 3항에 의거, 보세공장 반입, 가공

수입시 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질의회신」에서도 WTO양허관세를 적용토록 회신한 바 있음.

-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WTO양허세율로 적용함.

□ 이러한 실무관행과 달리 2006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APTA협정(과거 방콕협정)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림.

○ 재정경제부는 WTO협정과 APTA협정 사이에 협정세율 적용구조의 차이를 근거로 APTA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 해석관행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됨.

○ 현재 관세청은 WTO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없고 GSTP 및 APTA협정 등에서는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GSTP 특혜관세 및 대부분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으므로⁹⁾,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부정하고 있음.

□ 최근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관0084)¹⁰⁾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로서 판단함.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방콕협정(현, APTA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WTO협정은 원산지규정이 없고 WTO 참가국의 생산물품이거만 하면 WTO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FTA협정은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참가국의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임(〈표 Ⅲ-4〉 참조).

후 수입되는 물품은 생산국명 및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증명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세계무역기구협정 별표1의 가~1의 다는 WTO 양허세율을 의미).

9) 관세청 상담번호 20080714-0007

10)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세율 적용 여부 대상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 사건임.

- 이러한 구조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협정세율의 적용요건 중 직접운송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됨.

〈표 III-4〉 협정세율 비적용의 근거조항

| | | |
|---------------------------------------|---|---|
| <p>ESCAP 방콕 협정 (1976)</p> | <p>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에 첨부한다.</p> | <p>Article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respectiv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p> |
| <p>GSTP 협정 (1989)</p> | <p>〈부속서 II〉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1),(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품 GSTP체제 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p> | <p>ANNEX II RULES OF ORIGIN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under the GSTP in the light of paragraphs (a) and (b) of Article 3 and Article 15 of the Agreement on GSTP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RULE 1: Originating products – Products covered by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STP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icipant from another participant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as defined in Rule 2; or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p> |
| <p>APTA 협정 (2006)</p> | <p>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에 첨부한다.</p> | <p>Article 5 Application of Concess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p> |

다. 문제점¹¹⁾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문리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FTA협정의 기본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FTA협정은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가진 자유무역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FTA협정의 기본취지이므로, FTA협정을 문언대로 해석하여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FTA협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때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므로 ‘다른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지만, ‘다른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란 표현은 외국에서 바로 국내로 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 또한 제3국의 개입 없이 FTA 체결국에서만 제조활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둘째, 자유무역지역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관세 부과기준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 안으로 이전되는 시점으로 된 이유는 관세유예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 적용관세율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 아님.
 - 자유무역지역법에는 관세유예의 특혜만 규정하고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은 관세법의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¹²⁾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표준에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외국에서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담하게 됨.

11) 이하의 서술은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FTA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

12) 첫 번째 문제점에서 살펴본바듯이, FTA협정은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을 일반지역과 달리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규범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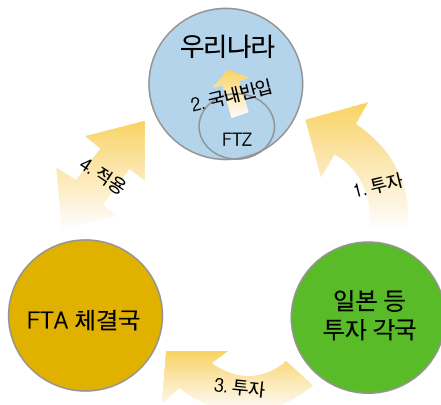
- 동일한 부분을 일반지역에 수입했을 때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임.

□ 셋째,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의 특혜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이 역외로 이전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취지에 반하게 됨.

○ 국내로 반입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시킬 경우, 관련 업체들의 역외이전 및 철수가 나타날 수 있음.

○ 투자를 희망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타 협약체결국으로 투자지역을 전환하여 역수출(국내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림 III-2] FTA 협정세율 비적용시 문제점



1.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2. 국내반입시 FTA협정세율 비적용
3. 타 협약체결국으로 투자전환
4. 타 협약국에서 생산, 수출

• 외국인투자 기피 및 기존업체 역외이전 및 철수 사례 발생가능

IV. 해외사례

1. 미국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Foreign-trade Zone)은 일반자유무역지역(General-purpose Zone)과 지정자유무역지역(Subzone)으로 구분됨.
 - 일반자유무역지역은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에서 지정한 장소에 국한되며, 기업이 일반자유무역지역으로 옮길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세관국경보호국과 협약으로 일반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정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게 됨.

- 일반자유무역지역은 주로 항만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하는 반면, 지정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제조단지에 위치함.
 - 2008년 4월 현재 250개의 일반자유무역지역과 450개의 지정자유무역지역이 있음¹³⁾.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며, 각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내의 혜택은 연방정부의 외국인거래법(Foreign Trade Acts)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됨¹⁴⁾.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으로서 탄력세율(Inverted Tariff) 적용, 재수출(re-export)에 대한 무관세, 생산과정에 수반하는 소비 부분에 대한

13) <http://ia.ita.doc.gov/ftzpage/info/zone.html>

14) KOTRA 인터넷홈페이지, 국가정보 - 미국

무관세, 주간 반입(Weekly Entry) 시스템, 관세유예(Duty Deferral)를 들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탄력세율(Inverted Tariff)이 적용됨.
 - 원재료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을 경우 완제품 수입업자는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제조업자보다 결과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수입업자에게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불공평하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자와 완제품 수입업자에게 동등한 여건을 제공하고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원재료 부분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모터(관세율 4%)를 수입하여 진공청소기(관세율 0%)를 제조한 경우에 이러한 진공청소기가 미국 관세영역 안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터 부분에 대한 관세율은 4%에서 0%로 낮아짐.

- 자유무역지역은 미국 관세영역 밖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반입될 당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수출(re-export)될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waste), 폐기(scrap), 생산감모(yield loss) 부분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예를 들어, B제품(관세율 15%)을 생산하는 정유회사가 A(관세율 15%)를 원재료 중 하나로 사용하는데, 수입된 A는 고온으로 가열되어 A의 30%가 손실되는 과정을 거침.
 -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정유회사는 30% 손실부분에 대해 관세를 부담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정유회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음.

- 주간 반입(Weekly Entry) 시스템은 자유무역지역 이용자들이 화물마다 일일이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반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관비용이 감소¹⁵⁾됨.
 -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개의 화물(1개당 시가 230,952달러)이 도착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일주일에 4,850달러(485달러¹⁶⁾×10개)인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물류비용이 연간 252,500달러(52주×4,850달러)인 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용은 연간 25,220달러(52주×485달러)이므로 주간 반입 시스템은 연간 226,980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화물량에 따라 중요도가 클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이동할 시점에 수입이 성립되고 그 시점까지 관세납부가 유예됨.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재고자산에 대한 관세납부액만큼 다른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1) 개 관

-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Foreign-Trade Zones Act)¹⁷⁾과 동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Customs Regulation) part 146에 따라 운영되는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기도 함.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관세법만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

15) 통관수수비용(MPF)는 신고건당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물건을 10건으로 계산하는 것과 10개의 물건을 1건으로 계산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16) 미국의 통관수수비용은 수입금액의 0.21%인데, 하한이 25달러이며 상한은 485달러임. 미국의 각 자유무역지역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weekly entry 관련 물류절감비용의 예시를 들면서 모두 최고금액인 485달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음.

17) 1934년 자유무역지역법(FTZA)은 미국 연방관세법의 Section 81a에서 81u까지 정리되어 있음. 이 법은 매년 개정되는데, 주로 자유무역지역의 선정 방식과 장소, 운영방법,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허용업무와 금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에 관세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연방법(공공보건, 이주, 노동, 복지, 소득세에 관한 법률)들은 그대로 적용함¹⁸⁾.

- 법에서 금지한 품목(description prohibited by law)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어 저장되거나 가공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금지품목과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법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물품이 반입허가를 받기 전에 미국 관세영역을 통과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미국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음.

2)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법적 지위

-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법적 지위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우대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Status), 비우대외국물품(Nonprivileged Foreign Status), 내국물품(Domestic Status),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의 4가지 종류로 분류됨.
- 이러한 반입물품의 지위(Zone Status)는 일반적으로 반입 신청자 또는 물품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지위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취급과 관세영역으로 반출시의 취급에서 차이가 발생함.
 - 관세법 시행규칙에 반입물품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 반입물품의 지위는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결정되기도 함.

18) <http://ia.ita.doc.gov/ftzpage>

- 모든 반입물품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지위의 결정을 보류한 경우나 자유무역지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반입물품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음.
- 우대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Status)을 선택하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될 당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됨.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 경우에 우대외국물품의 지위를 선택하게 됨.
 -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자는 우대외국물품의 지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특정 무역거래에서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적용가능성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서 특정 물품에 대해 우대외국물품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¹⁹⁾.
- 비우대외국물품(Nonprivileged Foreign Status)을 선택하면 소비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이전될 당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²⁰⁾.
 - 또한 비우대외국물품의 지위는 해당 물품이 다른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외국물품이나 제한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만일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세번 변경에 해당할 만큼 제조·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우대외국물품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내국물품(Domestic Status)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물품의 일부와 결합하더라도 쿼터, 관세, 내국세 없이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 내국물품의 지위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됨.
 - 미국에서 성장, 생산, 제조한 부분에 대해 모든 내국세를 납부한 경우
 - 이미 수입되어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한 경우

19)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 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p.152

20) 19 CFR 146.65(a)(2)

- 이미 관세와 내국세가 없는 조건으로 반입된 경우

- 모든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국물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며, 그러한 경우는 오직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으로만 인정할 수 있음.

□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은 수출, 폐기, 저장 목적으로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에 적용됨.

- 제한물품은 관세법상 관세환급(drawback), 보세보관(warehousing), 관세담보(bonding) 등의 적용 또는 내국세법상 내국세의 환급(drawback or refund), 면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수출된 것으로 간주됨.

3)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지리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미국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시점에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세유예(Duty Deferral)의 효과가 나타남.

□ 내국물품(Domestic Status)을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은 소비목적(Entry for Consumption)으로 미국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시점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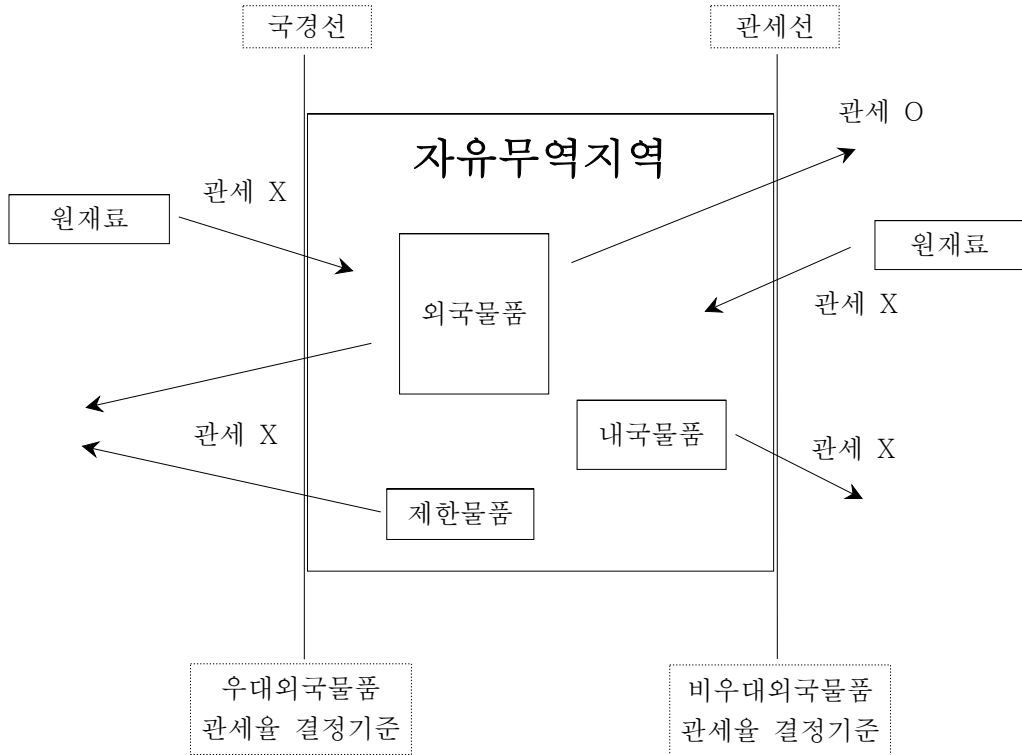
-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외국에서 원재료, 반제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을 거친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물품들은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그림 IV-1] 미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 소비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연방관세법상 조화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라 결정됨²¹⁾.
- 정부수입분에 대해서도 관세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부담해야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수 있음.
- 외교 또는 대외군사 목적의 반입은 관세법상 소비 목적의 반입이지만, 외교관, 영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물품은 국무성의 요청에 따라 관세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될 수 있음.

21) 미국 자유무역지역 협회 홈페이지, FTZ Manual, p.106~122

- 이러한 물품들은 다른 사람의 편의나 판매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물품이 개발도상국(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어야 함.
- 소비 목적으로 반입된 비우대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허가 받을 당시와 동일한 상태이어야 함.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FTA와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운송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현재 미국은 호주, 바레인, CAFTA-DR²²⁾,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NAFTA²³⁾,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하였으며, 콜롬비아, 한국, 오만, 파나마, 페루와는 진행 중에 있음.

□ 미국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협정세율로서 NAFTA를 들 수 있음.

- NA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
- 완전생산기준의 연장선²⁴⁾으로서 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1개국 이상의 NAFTA 협정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 부여하는 규정²⁵⁾을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산 플라스틱, 미국산 메탈, 멕시코산 잉크를 원재료로 하는

22)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23)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임.

24)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25) NAFTA Article 401c, 연방관세법 제3332조 (a)(1)(C)

펜은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됨.

○ 연방관세법 제3332조 (a)(2)(A)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은 비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비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NAFTA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 NAFTA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그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또는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하역, 선적 등의 작업 이외에 가공작업을 NAFTA 지역 외에서 거친 경우 NAFTA 제품의 지위를 상실함²⁶⁾. (직접운송원칙)

○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완전생산된 외과수술기구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면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입하여 두 제품을 함께 포장하여 수술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균처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이러한 의료장비는 NA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또는 의료장비의 상태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NAFTA 협정국이 아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추가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임.

다. NAFTA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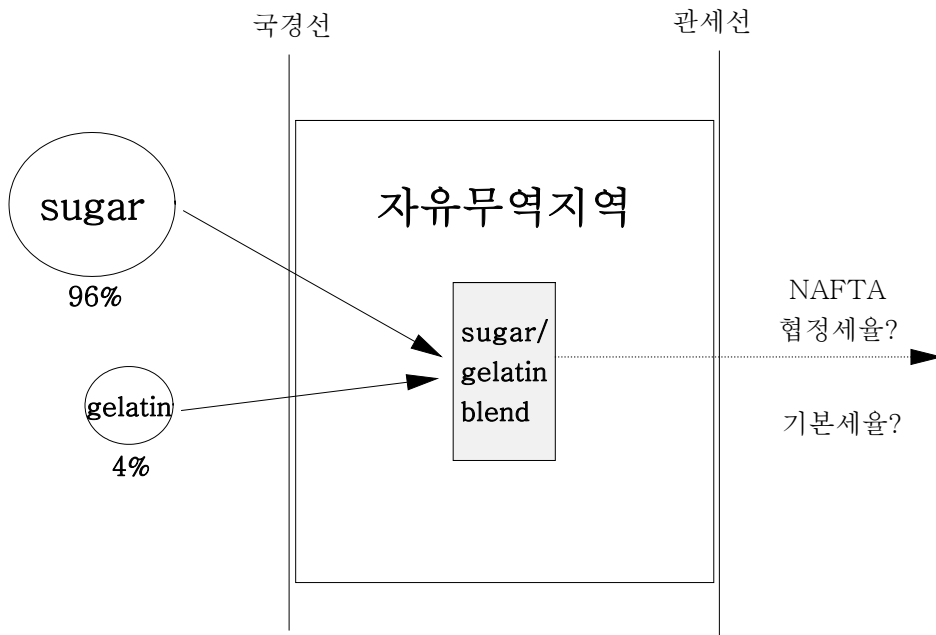
□ 원재료를 NA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고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청은 NAFTA 협정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동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문제가 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설탕 94%와 젤라틴 6%가 합성된 제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면 젤라틴 디저트 믹스를 만들기 위해 향, 색, 방부제, 소금, 구연산나트륨을 추가하는 식가공업자들에게 사용됨.

26) NAFTA Article 411

- 설탕은 브라질, 호주 등 NA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였는데, 최근에는 호주에서 수입되지 않고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와 같이 일반특혜관세율(GSP) 또는 카리브해 지역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젤라틴은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품임.

[그림 IV-2] 협정세율 비적용 사례



- 변경 이전의 관세청 유권해석(NY K80306, 2003. 11. 5.)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설탕과 젤라틴의 합성물을 만들었고 그 합성물이 미국 관세법상 세번 변경을 가져온 경우에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 대상으로 보았음.
- 이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HQ W967896, 2006. 6. 7.)은 설탕이나 젤라틴 모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었으므로 NAFTA산이 아니라고 결정함.
- 소수설은 제조나 가공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할 때 NAFTA 원산지 규정이 제일 먼저 적용된다고 함.

- 그러나 관세청은 원재료나 제조가공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AFTA 원산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연방관세법 제3332조 (a)(2)도 NAFTA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NAFTA산으로 보지 않게 됨.

2. 대 만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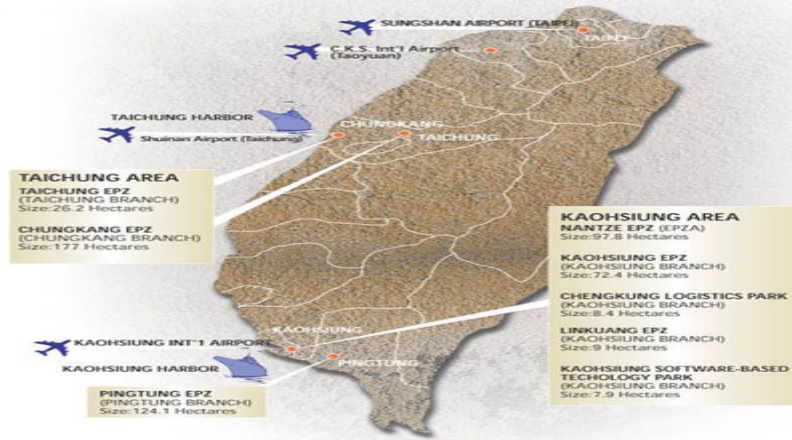
-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구(加工出口區, EPZ), 자유무역항(自由貿易港區, FTZ)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1) 수출가공구

- 수출가공구는 대만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1966년부터 설립되어 대만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8년 현재 카오슝, 타이쑹, 난쯔 등 10개의 수출가공구가 운영되고 있음²⁷⁾.
 - 수출가공구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자유지역(duty-free zone), 산업단지(industrial park)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음.
- 약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수출가공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치고 있음.
 -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27) KOTRA 인터넷홈페이지, 국가정보-대만

[그림 IV-3] 대만 수출가공구 현황



자료: 대만 EPZ 인터넷 홈페이지(<http://en.epza.gov.tw/onweb.jsp?webno=3333333366>)

- 수출가공구 관리국(Export Processing Zone Administration)의 역할은 ‘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재건축, 녹지시설 확충 및 미화작업 등 환경정비, 교통시설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그림 IV-4] 대만 수출가공구의 산업 변화

| 1966-1988 | 1989-1997 | 1998-현재 |
|------------------------|---------------------------------------|--|
| 노동집약산업 | 자본집약산업 | 기술집약산업 |
| 의류 가축 내수 전기전자 | 고부가가치 전자산업 반도체제품 광전자공학 중개서비스 | 고부가가치 전자산업 반도체제품 LCD파트&모듈 광전자공학 중개서비스 물류서비스 |
| 제조 가공 조립 | 제조 가공 조립 국제거래 | 제조 가공 R&D, 디자인 테스트 물류&거래 |

자료: 대만 EPZ 인터넷 홈페이지(http://en.epza.gov.tw/index_redir.jsp?)

- 투자관련 일체의 신청수속과 공장설립, 회사등록, 수출입허가 등 제반 운영관련 사항은 해당 수출가공구 관리처에서 일괄 대리 처리해 주며 별도로 주관 정부부처를 통할 필요 없음.
- 법인세는 산업구조 고도화 조례에 의거 5년 면세 또는 설비 가속감가상각, 법인세 납부 연기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함.
- 외국으로부터 기계설비 수입시 관세, 화물세, 영업세 등이 면제되지만, 설비수입 후 5년 이내 가공지역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국에서 원부자재, 연료, 반제품, 샘플 등을 수입할 경우에도 제세금이 면제됨.
- 평당 연간 토지임대비용이 400~600대만달러(NT\$)²⁸⁾로 저렴한 편임.

2) 자유무역항

- 2004년 9월에 처음으로基隆항에 자유무역항(自由貿易港區)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基隆항, 카오슝항, 타이페이항, 타이충항, 타오위안 항공화물 파크의 5곳에서 자유무역항을 운영하고 있음.
 - 2003년 7월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고 외국 투자유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항구설치관리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자유무역항이 설립됨.
- 환적²⁹⁾(transshipment), 유통(distribution), 혼재³⁰⁾(consolidation), 다국가 적

28) 1TWD = 32.54원

29) 운송품이 도착항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선적되었던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이전 및 재적재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적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하나의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이전 및 재적재되는 환적(ex. 선박→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방법의 운송기관 간에 이전 및 재적재가 발생하는 환적(ex. 선박→철도)임.

30) 다수의 하송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규모 화물을 화차, 트럭, 컨테이너(항공 컨테이너 포함) 등의 대규모 취급 단위로 만들어 수송하는 것임.

입·적출³¹⁾(multi-country vaning and devanning), 단순가공, 정밀가공과 같은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³²⁾.

-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물품과 설비에 대해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음으로써 운영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음.
 - 보관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져온 물품에 대해 관세, 물품세(commodity tax), 영업세(business tax), 담배·와인세, 담배·건강·복지 부담금, 영업촉진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 내의 물품은 자유롭게 가공되고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에 사업기회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함.
 - 국내영역에 위치하지만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check), 검사(inspection), 통관(customs clearance), 호송(escort)이 필요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단일창구(single-window)³³⁾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에 자율적인 관리를 허용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4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노무관리 측면에서 높은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내에 사업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기업인 또는 중국기업인들은 방문비자, 거주비자, 비자면제, 체류비자(landing visas), 관광용 통과 신청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관리청이 발급하는 ‘선택적 체류비자’³⁴⁾(selective landing

31)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고 빼내는 것을 말함.

32) 대만 FTZ홈페이지(www.taiwanftz.nat.gov.tw)

33)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논의중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로벌 싱글 윈도우(Global Single Window)’다. 통관신고서 기재항목의 표준화 및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을 통해 반출국에서의 수출신고가 반입국에서의 수입신고로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의미함.

34) 비자면제 다음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파악됨.

visas)를 이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외환송금과 외환거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의한 투자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해외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표 IV-1〉 대만 수출가공구와 자유무역항의 혜택 비교

| 수출가공구 | 자유무역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수입 기계설비, 원자재, 샘플의 수입세, 화물세, 영업세 등 면제 - ‘산업고도화촉진조례’에 의한 ‘신흥중요책략성산업’일 경우 5년간 영업소득세 등 면제 • 투자자의 권익보호 • 단일창구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낮은 용지 사용료 • 상호지원을 통한 산업다원화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물품세, 영업세, 담배·와인세, 담배·건강·복지 부담금, 영업촉진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간소한 통관절차 보장 • 단일창구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노무관리의 유연성과 비자발급의 편리성 제공 |

자료: 코트라 홈페이지, 대만 FTZ 인터넷홈페이지 내용을 재가공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1) 개 관

- 대만의 관세는 국외로부터 대만으로 수입된 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대만에서 수출되는 화물 또는 대만의 항구나 공항을 통과한 화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
- 대만의 관세는 세관 수입세칙 규정의 화물 종류와 적용세율에 의거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구분하여 병행 시행하고 있음.
 -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가격의 편차가 높아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20여개 수입 농수축산물 등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함.

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경우

- 수출가공구와 자유무역항 모두 대만 영토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들 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할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내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함.
- 수출가공구는 투자 촉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대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자유무역항은 그 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여부보다 물류 자체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관세 유예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수출가공구에서는 수출기업이 수출용 제조에 사용할 기계설비, 원부자재, 연료, 반제품, 샘플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³⁵⁾.
 - 자유무역항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 수출가공구와 자유무역항 모두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함.

3. 싱가포르

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1891년 자유항으로 지정되었으나, 1965년 독립으로 자유항을 폐지하고 1969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1969년 자유무역지역법(Free Trade Zones Act)을 제정하고, 공항이나 항만을

35) <http://www.ttc.gov.tw/public/Attachment/8717945164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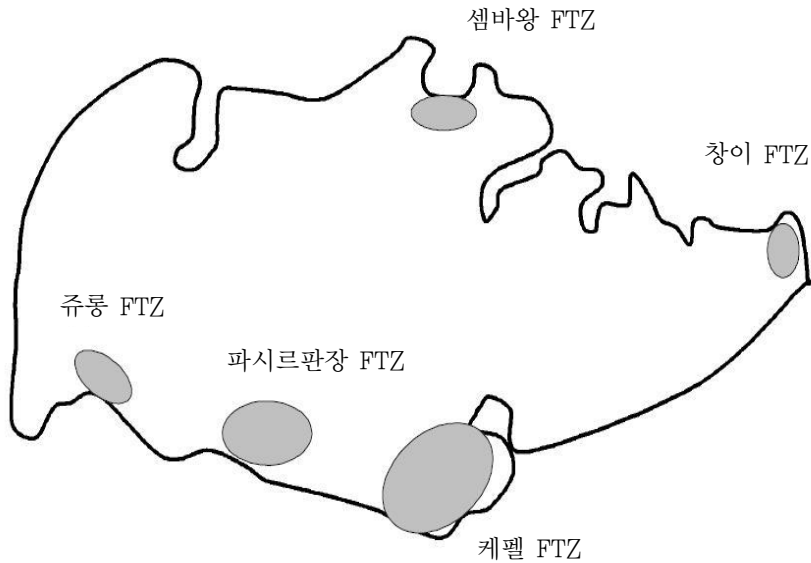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함.

- 자유무역지역법은 관세법(Customs Act)의 특별법 형태로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
- 현재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아시아의 관문 역할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제적 물류중심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싱가포르의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케펠 자유무역지역(Keppel FTZ), 파시르판장 자유무역지역(Pasir Panjang Wharves FTZ), 썬바왕 자유무역지역(Sembawang Wharves FTZ), JURONG 자유무역지역(Jurong Port FTZ)이 있으며, 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창이 자유무역지역이 창이공항(Cargo Terminal Complex of Singapore Changi Airport)에 설치되어 있음.
- 싱가포르의 모든 수입품은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들어와야 하지만, 관세청장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 허가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될 수 있음.
- 5개 자유무역지역의 총규모는 481만㎡에 이르며 4개 항만지역이 457만㎡로 전체의 95%를 차지함.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로 저장, 판매, 전시, 분리, 재포장, 조립, 분배, 분류, 등급부여, 반출 등이 가능함.
- 현재 3,000여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고 포춘 500대 기업 중 3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중 21대 기업의 동북아시아본부가 유치돼 있음.
- 190개 외국기업이 동남아 영업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고, 710여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국내총투자의 70% 이상을 점유함.

〈표 IV-2〉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규모

| 명칭 | 규모(m ²) | 주요 시설 |
|--------------|---------------------|--|
| 케펠 자유무역지역 | 2,590,000 | 3개의 컨테이너터미널(Keppel, Tangjong Pagar, Brani)과 인접한 배후지역 |
| 파시르판장 자유무역지역 | 650,000 | 컨테이너터미널 및 재래부두 |
| 쥬롱 자유무역지역 | 615,000 | 다목적부두 |
| 셈바왕 자유무역지역 | 199,000 | 다목적부두(자동차부두, 벌크 및 일반화물) |
| 창이 자유무역지역 | 237,000 | 6개의 항공화물터미널 |

[그림 IV-4]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위치



- 싱가포르는 자국의 고용 증진, 생산활동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첨단기술업체·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소득세법(Income Tax Act) 및 경제확장유인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EIA)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경제활동에 대해 특별세율 등을 적용하여 조세를 감면함³⁶⁾.

- 법인세는 5~10년간 면제를 해주며, 기업의 운영본부(글로벌 기업의 본부: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 설치시에는 10년까지 소득의 10% 우대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싱가포르의 국토가 서울시보다 조금 큰 정도로 협소하여 임대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며, 국내소비 규모가 작고 고임금,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기능이 중심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1) 지정 및 운영체계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함.
 -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라는 민간기업이 케펠 자유무역지역, 파시르판장 자유무역지역, 썸바왕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운영함.
 -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1996년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의해 민영화된 회사로서 국영기업인 Temasek Holdings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과거의 싱가포르 항만공사의 관리·감독업무는 싱가포르 해사항만공사가 신설되어 수행하고 있음.
 - 규제와 항행 관리 업무를 해사항만공사로 이관하고 있는 싱가포르항만공사는 화물처리만 전담하도록 하여 싱가포르항만공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시장에 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³⁷⁾.
 - 쥬롱 도시공사(JTC: Jurong Town Cooperation)는 상공부 산하기관으로서 쥬롱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 공항공사(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는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창이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리운영기관은 자유무역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 허가와 통제, 자유무역지역에 필요한 시설(보관시설, 건물, 세관검사소 등)을 제공하고 보수·

36) 주싱가포르대사관 조세제도, 2008. 6

37) <http://www.singaporepsa.com/index.html>

유지 활동을 함.

- 또한 매년 자유무역지역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수입 및 지출내역, 기타 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연차 및 회계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³⁸⁾.
- 싱가포르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함.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상황과 과세를 관리하며, 역내 물품의 사용·소비·제조·거래 등에 관한 허가 업무를 담당함.

2) 수입화물 및 세관관리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반출 또는 통관할 때에 화물통관허가서(Cargo Clearance Permit: CCP), 송장, 컨테이너 번호, 적출장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재포장, 수선, 분류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은 수출, 수입 모두 72시간 장치허용기간을 부여하며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 대해 14일간 장치허용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에는 법에 금지된 품목(중독성 주류, 잎담배와 제조담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이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물의 반출은 금지될 수 있음.
- 주류, 담배 등 4개 과세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이 불허되어 「과세 보세물품의 무장치장(Licensed Warehouse)」에 의무적으로 장치하여야 함.

38)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법 14조

- 4개 과세물품 이외의 비과세물품은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보관이 가능하고, 이들 물품의 80% 이상은 화물통관허가서 없이 세관 검사지역(Check point)을 통해 재수출되고 있음.
 -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환적 또는 이적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 등을 생략하고 적하목록 제출만으로도 가능함.

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

1) 개 관

- 싱가포르의 전통적인 자유무역항으로 관세 및 상품·서비스세(Goods&Services Tax, GST: 7%)를 부과하는 품목은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 등 4개 품목군에 불과³⁹⁾한데, 이것은 국내산업 보호 및 사회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임.
- 싱가포르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시 상품·서비스세를 부과·징수함⁴⁰⁾.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 운영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소비용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 및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되며, 반대로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여 관세가 환급됨⁴¹⁾.

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저장, 재수출 및 환적에 사용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서비스세를 면제함⁴²⁾.

39)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List+of+Dutiable+Goods.htm>

40) <http://www.iras.gov.sg/irasHome>

41) www.customs.gov.sg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소비용으로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시에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 및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됨.
-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서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됨.

4. 국제 비교

- 본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해당 국가의 관세법 해석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비교가능한 자료가 부족함.
- NAFTA 협정세율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관세법에는 비원산지 원재료를 수입하여 만든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NA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다만, 원재료가 원산지이든 비원산지이든 간에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개정건의안에 비추어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이 미국 관세영역 안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문제삼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에 기반한 제조업체는 멕시코, 캐나다에 기반한 제조업체에 비해 관세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FTA에 의해 자유무역지역

42)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3.aspx?id=2026>

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

- 예를 들어, 제3국에서 TV 부품을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조립하면 NAFTA산으로 인정되어 TV에 대한 관세가 없지만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조립하면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관세를 부담해야 함.

〈표 IV-3〉 TV에 대한 관세부담 비교

| TV 종류 | 피츠버그 | 멕시코 |
|-----------------|--------|-----|
| CRT | \$2 | \$0 |
| CRT Projection | \$3 | |
| LCD Projection | \$13 | |
| SXRD Projection | \$0.25 | |
| Plasma | \$23 | |
| LCD | \$45 | |

자료: NAFTAZ, 'Trade Agreement Parity Initiative Update'

- 최근 미국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들이 NAFTA 국가에 공장을 두는 경우와 자유무역지역 내에 공장을 두는 경우 사이에 관세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H.R. 6415)이 하원에 계류 중임⁴³⁾.
- 미국 자유무역지역법은 국내에 반입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관세율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국내 반입물품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고만 규정⁴⁴⁾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관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비원산지 원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경우 세번 변경에 의한 NAFTA산의 인정을 허용하지 않음.(제3332조 (a)(2)(A))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된 NAFTA산을 미국 국내 또는 NAFTA로 수출할 경우 FTA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43) NAFTAZ 홈페이지(http://www.naftz.org/index_categories.php/resources/66)

44) 19 USC §81c(a)

- 비원산지 원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경우 세번 변경으로 NAFTA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NA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건의함.

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 및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1970년 마산에 설치된 것으로 시작으로 현재 1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자금조달 지원뿐만 아니라 관세 감면 또는 관세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취지, 형태, 지원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날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국내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때 FTA 등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른 체약국에서 운반된 물품이 아니고 자국 영토 내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운송원칙에 반한다는 것임.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그러나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다양한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FTA 체결 확산은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장점을 둔화시켜 자유무역지역의 입지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자유무역지역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관세법(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특례조항)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임.

- 개정안의 취지는 FTA 국가에 기반을 둔 제조업자와 미국 자유무역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상 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최선책임.

- 이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협정세율 적용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되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협정관세를 우선 적용하며 이 때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으로 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협정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은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추가 개정의견이 있었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관세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적용근거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의 논리대로 FTA 협정 등 국제조약의 해석상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면 이와 모순되게 국내법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국내법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먼저 국제법상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없도록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미국은 NAFTA와 관련하여 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NAFTA의 직접운송원칙 근거규정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정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미국의 통관제도』, 관세청, 1999.
관세청, 『관세연감』, 관세청, 2006.
박재곤·강기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박형래·라공우, 『관세론』, 두남, 2006.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수출가공구(EPZ) 정보
(<http://www.ilo.org/public/english/dialogue/sector/themes/epz.htm>)
대만 수출가공구 위원회 홈페이지(<http://en.epza.gov.tw>)
대만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http://www.taiwanftz.nat.gov.tw>)
미국 국제무역청 홈페이지, 자유무역지역 정보(<http://ia.ita.doc.gov/ftzpage>)
미국 자유무역지역 협회 홈페이지(<http://naftz.org>)
미국 자유무역지역 자료센터 홈페이지(<http://www.foreign-trade-zone.com>)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s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코트라 홈페이지, 국가정보(<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dknation>)
인도 특별경제지역 홈페이지(<http://www.sezindia.nic.in>)

〈부 록〉

1. 경제특구(Economic Zone)의 구분

| 중심 | 무역 | 제조 | | | 서비스 | | |
|------------|--|-------------------------|---|---------------------------|------------------------------|--|---|
| 종류 | 자유항 (Free port) | 특별경제 지역 (SEZ) | 수출가공구 (EPZ) | 산업장려 지역(EZ) | 정보가공지역 (IPZ) | 금융서비스 지역 (FSZ) | 상업자유지역 (CFZ) |
| 경제적 목표 | 무역센터 육성 | 탈규제; 민간부문 투자 | 수출산업 증진 | 낙후된 지역에서 중소기업 육성 | 정보센터 구축 | 금융허브 육성 | 무역·수입 촉진 |
| 무관세 범위 | 무역, 산업, 소비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 선택적 | 자본재, 생산요소 | 없음 | 자본재 | 다양 | 저장용·재수 출되는 모든 물품 |
| 전형적인 활동 | 무역, 서비스, industry, 은행 등 | 모든 유형의 산업과 서비스 | 일부 산업과 제조업 | 전부 |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그래픽 | 금융 서비스 | 보관, 포장, 유통, 선적 |
| 국내판매 | 자유항 내에서는 제한 없음. 자유항 외에서는 관세를 납부하면 제한 없음. | 크게 제한받음 | 생산품 중에 좁은 범위에 한정됨. | - | - | 생산품 중에 좁은 범위에 한정됨. | 관세를 납부하면 제한없음 |
| 대표적인 사례 | 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자유항 바탐 라부안 마카오 | 중국 | 아일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모리셔스, 케냐, 헝가리 | 인도네시아; 세네갈 | 인도-방갈로르, 캐리비안 | 바레인, 두바이, 캐리비안, 터키, Cayman | Jebel ali, 콜론, 마이애미 (미국), 모리셔스, 이란 |

자료: ILO 홈페이지, Types of zones

2. 보세구역 등의 구분

□ 보세구역

가. 보세구역의 의의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관세징수권을 확보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관리하에 둔다.

보세구역은 엄격한 세관의 관리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보세화물은 사실상 세관장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당해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징수권이 확보된다.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정적 보세제도)와 보세운송제도(동적 보세제도)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보세구역은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에서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나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보세구역 장치

수입화물이 본선으로부터 하역되면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거대중량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한 물품
-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후 수출·수입할 수 있어 업체는 금융부담이 해소되며,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므로 수출이 진흥된다.

□ 관세환급제도와 보세공장

관세환급제란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 등을 일단 납부하였다가 제품을 수출한 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로서 수출품을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관세액만큼의 자금부담을 받는다. 따라서 가공업자는 가능한 한 가공기간 동안 자금부담이 없는 보세공장을 활용하려고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환급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세공장의 특허대상을 대폭 제한하였다. 보세공장은 무환수탁가공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일반 수출품에 대하여는 환급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외국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운송구간은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및 통관우체국이다.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하며 국경에서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근접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이다. 만약 수입업자가 내륙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에 수입화물을 장치하고 관할 세관에서 통관하기를 원하면 항만에서 내륙공장까지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 허용된다. 보세운송을 하려면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 보세운송 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하역된 이후 보세운송신고서에 적화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 『관세론』, 박형래·라공우, 2006, p. 410

3. 심판 청구번호 국심 2007관0084(2007.12.31)

(1)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주 문

1. ○○○세관장이 2007.5.22. 및 2007.7.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2. 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5.26.부터 2006.8.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7건으로 ○○○자유 무역지역내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피복전선(Magnet Wire, HSK 8544.11-1000호, 기본세율 8%,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면서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 중 방콕협정 양허관세율(6.2% ; 이하 “방콕협정세율”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22. 및 2007.7.4.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6.2%)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협정”라 한다) 제5조, 제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원산지규정 제1조의 양허세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APTA협정 제5조의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의 표현은 협정 참가국간 물품이동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양허한다는 선언적 규정이고, 동 협정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참가국의 영역(the territory of a Participating State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의 의미 또한 수입물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반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 표현으로서 원산지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수입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된 쟁점물품은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의 요건에 충족되는 등 APTA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 세율적용의 변경근거로 삼았던 재정부 유권해석(○○○, 1997.7.22)은 WTO양허세율뿐만 아니라 방콕협정세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APTA협정 제12조에 규정한 “조세·지방세·기타 내국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안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물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라는 모든 참가국이 특혜무역의 혜택을 향유토록 한 협정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방콕협정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는 1997.7.22. 부터 2006.8.31. 까지 약 10여년 이상 ○○○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피복전선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면서 방콕협정세율(6.2%)을 적용하여 총 9,974건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이의없이 수리받았고, 처분청 또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1997.7.22), 관세청의 유권해석(○○○, 1997.7.24) 및 질의회신(○○○, 1997.9.19), 관세청 의견(○○○, 2002. 2.5)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방콕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처분청이 2000년 2건, 2001년도 9건, 2002년도 28건, 2003년도 9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7건 총 57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어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는 이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방콕협정세율이 적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신의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방콕협정 제3조(APTA협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는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부속서에 열거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양허세율적용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1997. 7. 22.)은 WTO참가국에 대하여 일반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동 유권해석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 “방콕협정 양허관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재정경제부(○○○, 1997. 7. 22.)와 관세청(○○○, 1997. 7. 24.)의 유권해석은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입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물품은 WTO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세관의 질의(○○○, 1997. 9. 5.)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 1997. 9. 19. 2002. 2. 5.) 역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국내반입(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WTO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콕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약 60여개의 동종업체는 1997. 7. 22.부터 2006. 9. 18.까지 9,97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대로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이 2000년도 이후 57건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여 세율적용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7. 7. 22. 재정경제부가 유권해석(○○○)하기 이전까지는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착오하여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고 사후심사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 이외의 방콕협정세율 대상품목들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은 기본세율 또는 WTO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 11. 16. 쟁점물품에 대한 추정여부를 질의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기본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통보(○○○, 2007. 5. 16)받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생략)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율표

HS 8544.11 동제의 절연피복전선(기본세율 8%,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6.2%)

(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EAN)의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방콕협정, 1976.5.24. 조약 제574호로 공포된 것)

제3조 :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1로 첨부된다.

제6조 : 제3조 및 제5조의 목적상 상품이 한 참가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또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2에 열거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상품은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 무역의 공고화·지속적 확대 및 가일층의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아래의 세항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b) 조세·세율 및 기타 내국세와 부과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내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2006.8.24. 조약 제1802호로 공포된 것)

제3조 【원칙】 이 협정은 다음 각목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나. 투명성·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참가국간 무역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 【양허적용】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대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한다.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I로 첨부된다.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II에 기술된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12조 【무역 확대 및 다양화】 무역의 강화·지속적 확대 및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다음 각목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나. 조세·지방세·그 밖의 내국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13조 【편의·이익·특전·면제·특권】 무역에 있어서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그 국가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편의·이익·특전·면제 또는 특권은 나머지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영역으로 운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속서Ⅱ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에 의거 동 협정상 특혜양허를 받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품】 협정 체제내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조건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나. 당해 상품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마)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6.12.30. 대통령령 제19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 12. 26. 법률 제8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44조 【자유무역지역안의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4항 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 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기재사항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방콕협정세율은 방콕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방콕협정 참가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쟁점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참가국(우리나라, 인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으로서 1976. 6. 17. 발효되었고, 동경라운드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제2항(C)의 권능부여조항에 의해 WTO 최혜국(MFN)대우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2002. 1. 1.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계기로 관세특혜 확대협상을 추진하여 2006. 9. 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협정)으로 개정·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방콕협정과 APTA협정에 대하여 1976. 5. 18. 및 2006. 6. 30. 각각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았으며 동 협정에 의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별표 제3의 가 내지 마에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APTA협정 발효일인 2006. 9. 1. 이전에 방콕협정양허세율(6.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방콕협정과 APTA협정은 명칭만이 상이할 뿐 그 본질은 동일하므로 방콕협정 및 APTA협정의 문안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방콕협정 제3조와 제6조에는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와 “상품이 한 참가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또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2에 열거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상품은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APTA협정 제5조에는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대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

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관세·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조건과 관련한 동 협정의 부속서 II 제1조에는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이거나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세율은 각국별 양허표에 계기된 품목 중 동 협정 부속서 원산지 기준에 부합한 물품으로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양허표에 계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방콕협정(현, APTA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 2007. 11. 23.).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1997년 7월경부터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소급과세는 신의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정부는 1994.12.3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관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4465호)”을 공포하여 2005.1.1. 시행하도록 하였는 바, 동 규정은 WTO양허관세,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방콕협정양허관세, 유엔개발도상국 양허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고,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구,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피복전선으로서 동 회사는 국내의 전기전자제조업체 등 실수요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주문받아 1997.7.24. 이전까지 기본세율(8%)로 수입신고하여 공급하여오던중 관세청이 1997.7.24.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도 WTO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1997.7.22)을 전국세관에 시달(○○○)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체는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6.2%)적용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7.9.5. “○○○수출자유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상품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경우 WTO양허세율, 방콕협정 양허세율 및 유엔개발도상국간의 양허세율의 적용가능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1997.9.19.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은 WTO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동종업체는 그 무렵부터 2006.8.30.까지 약 9,900여건으로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별다른 지적없이 이를 수리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수입신고된 57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정부는 참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방콕협정(1976. 5. 24. 조약 제574호로 공포된 것)을 개정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조약 제1802호, 2007. 9. 1. 발효)을 2006. 8. 24. 공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년 9월초 APTA협정에 의하여 새로이 양허된 Inverter에 대하여도 양허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문의하였고,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 2006. 9. 19)하였으며, 사단법인 ○○○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2006.9.28.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APTA협정 양허관세율적용”을 요청하였고, 재정경제부는 2006. 10. 13.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협정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APTA협정의 발효일(2006.9.1.) 이전까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소급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

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6. 6. 29. 〇〇〇 판결), 비과세관행의 성립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첫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2.23. 〇〇〇 판결외 다수)”라고 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세계무역기구협정(WTO)등에 관한 양허관세규정”은 WTO일반양허관세 뿐만 아니라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방콕협정양허관세, 유엔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율 및 그 적용대상범위가 일괄로 규정되어 처분청은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가 원산품에 대한 WTO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유권해석(〇〇〇, 1997.7.22.)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1997. 9. 5.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WTO양허세율, 방콕협정양허세율 및 유엔개발도상국간 양허세율의 적용여부”를 질의(〇〇〇)한 점,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7. 9. 19. “WTO양허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〇〇〇)하면서 방콕협정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아 회신내용이 부족한 점, 관세청의 동 회신에 대하여 처분청은 WTO양허세율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방콕협정세율까지 포함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비롯한 60여개의 동종업체는 1997년 7월경부터 2006. 8. 31.까지 약 9,900여건으로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입신고수리하였고, 2000년 이후 57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인정한 점, 관세청 및 처분청이 보세공장제조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한 품목은 대부분 WTO양허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방콕협정세율이 실행세율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1997년 7월경부터 APTA협정이 발효된 2006.9.1.까지 약 10년간 쟁점물품에 대한 방콕협정세율(6.2%)을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고, 다수 수입신고건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장기간 동안 기본세율 대신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 1983.12.13. 〇〇〇외 다수).

(바) 따라서, 청구법인 및 동종업체가 1997년 7월경 이후 약 10여년간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질의회신(〇〇〇, 2007.5.16.)에 근거하여 소급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미국 관세유예 유사제도 비교

| | 자유무역지역 (FTZ) |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무관세 일시수입 (Temporary Importation Bond; TIB) | 관세환급 (Drawback) |
|----------------|--|---|---|--|
| 관세 | 물품이 미국내 소비 목적으로 FTZ에서 반출될 시점에 관세 부과 | 소비 목적으로 보세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만 관세 부과 | 무관세로 반입, 수입업자는 1년 안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함 |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 시 관세 납부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함, 이후의 수출이나 파기에 관해 기납부관세액의 99%를 청구할 수 있음 |
| 보관기간 | 제한 없음 | 5년 | 1년 | 수출 또는 폐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 환급신청해야 함 |
| 관세율 변경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 미국 관세영역 내 반입 | 가능 (제한물품은 제외) | 불가 | 불가 | 가능 (단,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입시로부터 5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기해야 함) |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보관 | 동일한 공장에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함께 보관 가능 | 불가 (내국물품이 보관됨) | N/A | 국내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
| 물품의 이동 |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 또는 수출 가능 | 보세창고와 FTZ 사이의 이동만 허가 |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가능 | N/A |
| 물품의 미국 도착 | 물품이 미국내 항만에 도착하면 운송담보(transportation bond)하에 직접 FTZ로 선적 가능 | 물품이 미국내 항만에 도착하면 운송담보(transportation bond)하에 직접 보세창고로 선적 가능 | 물품이 미국내 항만에 도착하면 1년 안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 | N/A |
| 관세담보 조건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

자료: <http://questaweb.com/sln-components-ftz-matrix.aspx> (2008. 7. 28. 일자)

세법연구 08-03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2008년 9월 5일 인쇄

2008년 9월 9일 발행

저 자 원종학 · 마정화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관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397-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